

### 3. 교원업적평가기준 시행세칙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교원의 업적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업적평가의 시기·대상) (2008.9.1.내용조정)

1.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교원의 승진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업적평가위원회를 년2회 실시하며, 평가대상자는 년1회를 초과하여 심사를 받을 수 없다.
2. 정년보장임용교수는 매4년마다 연구업적평가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정년보장교원 업적평가기준 세부지침은 따로 정한다.(2021.12.23.개정)
3. 교원의 업적은 현 직위기간 중의 업적만을 평가 대상으로 한다.
4. 이전에 승진이나 재계약에 반영되었던 업적은 새로운 승진이나 재계약에 필요한 업적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.

제3조(연구업적 인정점수) 연구업적의 인정점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<표1>과 같이 점수를 인정한다. (2009.3.1.수정)

<표1. 연구업적 인정점수>(2021.12.23.개정)

대항목	평가항목		평가 점수	상한 점수
	소항목			
논문	저명학술지	국제A	20	
		국제B	16	
		국내등재지	12	
		국내등재후보지	10	
	심사제도학술지	국외/국내	8/4	
단행본	교내학술지		6	
	전문학술서	국외/국내	16/14	
	교과서(대학 이상)	국외/국내	12/10	
	교과부검정교과서			
	기타 서적 및 교양서적	국외/국내	2/2	4
	편저	국외/국내	6/4	8
	번역(1편)			
	-전문학술서적		10	10
	-전문학술서적이외		8	8
학술 활동	학술발표	국제/국내	4/2	6
	학술회의토론자		2/1	6
	사회자		4/2	6
	수상		1000만원당 1점	20
	연구비 수혜 (중앙관리연구비에 한함)			
	연구보고서 (중앙관리연구비에해당한 연구보고서는 2배 인정)		4/2	4
	정부주관 평가 보고서(대학기관평가 인증, 대학기본역량진단 등)			
	정부주관 대학의 국책사업 보고서 (ACE, 대학혁신지원사업 등)		12	20

\* 정부주관 평가 및 사업보고서 적용 대상 : 해당 보고서 핵심집필진(2021.12.23.개정)

## 1. 논문

- ① 저명학술지: 국제학술지(A)는 AHCI, SSCI, SCI 국제학술지(B)는 SCOPUS를 말하며 국내학술지는 학술진흥재단의 등재(후보)지 이상의 학술지를 말한다.(2008.3.1.수정)(2021.12.23.개정)
- ② 심사제도 학술지: 저자와 심사자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가 실시되는 학술지를 말한다. 교내 연구기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의 경우는 익명의 외부 심사제도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.
- ③ 삭제 (2017.02.03.)
- ④ 연구비 지급기관이 발행한 연구보고서, 학술지가 아닌 월간지 및 잡지류에 게재된 원고는 논문으로 인정치 아니한다.
- ⑤ 투고 및 심사가 국제간에 진행되는 학술지는 국외학술지에 포함된다. 다만 프로그램에 등재되거나 초록집에 수록된 건에 한하여 인정한다. (2005.3.1.단서조항삽입)
- ⑥ 삭제 (2017.02.03.)

## 2. 단행본

- ① 전문학술서: 독창적이며 논문형식을 갖춘 학문적 업적물로서, 해당 전공 분야에서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저서를 의미한다. 그 내용은 학술 논문과 동일하게 체계적 목차, 본문, 참고문헌, 각주를 갖춘 저서이어야 한다.(2008.3.1.추가삽입)(2017.02.03.자구수정)
- ② 교과서: 대학 수준 이상의 교과서를 말하며, 새로운 장을 추가하거나 전반적인 개정작업을 한 개정판의 경우에는 50%를 인정할 수 있다. 새로 추가된 저자는 50%를 인정받는다.
- ③ 기타 전문서적 및 교양서적: 연구기관이 발행한 단행본, 일반 교양서적 등을 포함한다.
- ④ 번역: 전공분야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전문서적의 번역을 말한다.
- ⑤ 편저에는 본인의 기존 학술 논문을 모은 저서가 포함된다. 편저의 학술적 성격이 거의 없거나, 단순한 편집물이라고 평가되는 경우는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 편저의 편저자에게는 기준점수의 20%( $1/n$ 적용)를 가산하나, 편저자와 필자가 1인일 때는 제외한다. 또한, 편저에 본인의 글이 수록되지 않은 편저자에게는 기준점수의 20%만 인정한다( $1/n$ )。(2008.3.1.개정)

## 3. 학술활동

- ① 학술발표: 학술발표, 토론자, 사회자(좌장)는 정기학술대회(춘계, 하계, 추계, 동계)에서의 논문발표 및 연구결과 발표를 말한다. 동일한 논문을 두 번이상 발표한 경우는 한 번의 발표에 대해서만 인정한다. 다만, 프로그램에 등재되었거나 초록집에 수록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. (2008.3.1.개정)
- ② 국제학술대회는 발표자가 3개국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. 다만, 발표자가 10명 이상으로 외국인 발표자가 전체 발표자의 1/3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 논문 발표자가 20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국제 공용어 또는 해당 외국어를 사용해야 한다. 점수산출 방식은 논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(반드시 국제학술대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시만 인정함). (2008.3.1.신설)
- ③ 수상: 국내외 학술상, 우수 논문상 수상, 그밖에 전공과 관련된 업적의 우수성으로 인한 수상을 말한다.
- ④ 연구비 수혜: 심사제도가 있는 외부기관의 연구비 수혜를 말하며,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공동연구 인정비율에 의거하여 업적이 인정된다. 다년과제의 경우 매년 산정한다. (2021.12.23.개정)
- ⑤ 연구보고서: 연구사업의 결과로 연구비를 지급한 단체나 기관이 발행한 연구보고서로서 학술적 가치를 지닌 연구에 한한다

#### 4. 공동연구 인정비율

연구, 저술, 학술 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한 경우에는 다음의 인정비율이 적용된다. 다만, 공동연구에서 책임연구원(책임저자, 주저자, 제1저자, 교신저자)은 10%까지 추가로 가산할 수 있다.(2017.02.03.자구수정)

저자수	단독	2인	3인	4인	5인 이상
인정비율	100%	70%	50%	30%	20%

제4조(교육업적 인정점수) 교육업적은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다음의 <표2>와 같이 점수를 인정한다. (2008.3.1.개정)(2016.4.25.내용추가)(2022.6.21.개정)

<표2. 교육업적 인정점수>

평 가 항 목		점 수	상한 점수
대항목	소 항 목		
강의 및 실습	강의시간	학점수 x 0.5점 다만, 실·처장의 보직교원은 책임시수를 전임교원 책임시수로 환산하여 산입한다. <u>강의계획서 미제출</u> <u>1강좌당 -2점</u>	
	휴강 및 보강 여부	휴강이 없으면 5점 보강하지 못한 경우 1시간당 -1점	5/연
	강의평가	평균 80%이상 15점 70이상-80%미만 8점 60이상-70%미만 6점 50이상-60%미만 4점 50%미만 0점	15/연
	외부강의평가	평균 80%이상 5점 70이상-80%미만 3점 60이상-70%미만 1점	
	대단위 강의	70명 이상 1점/건	
	교과목 및 교수방법 개발	2점/건	
	교과·비교과 연계	교과·비교과 연계 과정 반영 교과목 2점/건(2022.6.21.개정)	5/연
	주 4일 강의 배정	1점/학기별	2/연
학생 지도	성적 정정	성적 정정기간 외에 성적 정정시 과목당 -1점	
	Office Hour 실천	주1회 2점 주2회 3점 주3회 이상 5점	5/연
교육 역량 개선	석박사 배출 학생수	박사 1명 3점 석사 1명 2점 석사연구보고서 1점	6/연
	교수법 연수	시간 수 × 0.5점 (임상 연수, 교수 연수 등 교수 개발 프로그램)	2/연

## 1. 강의 및 실습

① 강의시간: 가톨릭꽃동네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정규과목의 학점수에 한하여, 기업체의 위탁교육프로그램, 사회교육원 강의 등의 특수교육은 포함하지 않는다. 팀티칭 과목의 시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. 책임교수는 강의에 대한 전반적 계획 및 학생평가등 담당 강의를 총괄한다. (2021.6.22.개정)

책임교수있는 경우	책임교수	$1\text{시수} + (\text{잔여시수} \times \frac{\text{담당주차수}}{15})$
	참여교수	$\text{잔여시수} \times \frac{\text{담당주차수}}{15}$
책임교수 없는경우	$\frac{\text{담당주차수}}{15}$	

연구년 기간은 평균 계산에서 제외한다. (2003.11.15 개정) (2008.3.1.수정)(2009.3.1.단서조항 추가)(2017.7.1. 수정, 자구수정)

② (교수업적인정점수의 개별통보) 총장은 교수업적 중 강의평가와 외부강의평가의 결과를 매학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교원에게 개별 통보한다. (2009.3.1.신설)

③ (외부강의평가방법) 외부강의평가는 매학기 2회 이상 3회 이하의 강의를 시청각 녹취를 보존하고 외부강의평가위원회가 시청하여 평가한다. (2009.3.1.신설)

④ (외부강의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 외부강의평가위원회는 총장과 총장이 지명하는 2명과 이사장과 이사장이 지명하는 2명의 인사로 구성하며, 이사장과 총장은 각 지명자를 1명을 평가대상 교원의 강의를 평가할 수 있는 근접한 전문분야의 인사로 한다. 외부강의 평가위원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담당하며, 실무수행의 책임은 총장이 담당한다. (2009.3.1.신설)

⑤ 휴강 및 보강 여부에 대한 평가에서 휴강이 없으면 5점을 부여하고, 학회 및 공무 등 의 사유에 의하여 휴강을 할 경우에는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반드시 교무입학처에 제출하여야 하며, (2009.3.1.신설)(2019.2.8.개정)

⑥ 강의평가는 교무입학처에서 시행하는 수업평가 설문결과를 활용하며, 강의평가 점수의 최고 평점은 15점으로 한다. 강의평가 결과치의 점수산정은 한 학기에 학부강의 2과목, 2개 학기분을 평균한 점수를 적용한다, 다만 보직발령, 책임시수 감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대학원 1과목과 학부 1과목만 담당하였을 경우에는 1과목을 적용한다. 배점기준은 수업평가 결과 50%미만 0점, 50%이상 60%미만 4점, 60%이상 70%미만 6점, 70% 이상 80%미만 8점, 80%이상은 15점으로 한다. (2009.3.1.신설)(2019.2.8.개정)

⑦ 대단위강의: 수강학생이 70명 이상인 경우 1강좌당 1점을 가산한다. (2009.3.1.수정)

⑧ 교과목 및 교수방법 개발: 교과목 및 교수방법 개발에 있어서 창의성과 우수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,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 교과목 개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교과과정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. 교과목 개발은 기준에 개설된 적이 없는 학제간 교과목 개발을 의미한다. 가상강의 등 새로운 교수방법 개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교수업적평가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야 한다. 동일 과목당 최초 1회만 인정한다. (2008.3.1.추가삽입)

⑨ 주 4일강의 배정: 한주 강의 배정시간이 4일이상으로 배정되면 한학기에 1점의 점수를 배정한다.

⑩ 성적 정정에 따른 감점 : 성적 정정기간 외에 성적 정정이 발생할 경우 해당 교원의 업적 인정 점수 산정시 과목당 1점씩 감한다.(2016.4.25.개정)

⑪ 교육역량 개선 항목은 임상 연수, 교수 연수 등 교수법 관련 워크숍/포럼 및 교육에

참여하고 이수증(수료증)을 제출한 경우 시간당 0.5점을 부여하고 2점(연)까지 인정한다.  
(2023.12.19.개정)

## 2. 학생지도

① Office Hour는 1일 2시간 이상을 재학생들에게 전공과 관련한 보충지도 및 진로지도 등을 위한 상담시간을 말하며, 교무입학처에 제출한 상담시간표 상의 시행일수(1·2학기 평균회수)에 따라 주1회 2점, 2회 3점, 3회 이상 5점을 부여한다. (2009.3.1.신설)(2019.2.8.개정)

### ② 석·박사학생지도

석박사학생의 지도교수(주심교수)는 배출기준으로 인정점수의 100%, 부심교수는 인정점수의 30%를 인정한다. (2008.3.1.수정)

3. (2009.3.1.삭제)

4. (2009.3.1.삭제)

제5조(봉사업적 인정점수) 봉사업적 평가항목 및 기준은 각 호의 기준에 따라 <표 3>과 같이 점수를 인정한다. 중복점수도 인정한다. (2009.3.1.개정)

<표3. 봉사업적 인정점수>

구분	대항목	평가항목	평가 점수	상한 점수
		소항목		
교내 봉사	학교 행정	실·처장	6/연	상위 1개 인정
		기타보직	3/연	
	각종 위원회	교무위원회(참석회당)	0.5/회	5
		기타위원회(참석회당)	0.5/회	5
	입시	입시전형위원	2/회	
		고교대상 특강 및 입시설명회	2/회	10
		고교방문	1/회	10
	학생을 위한 활동	해외봉사인솔	5/회	
		동아리, 학생단체, 학습소모임 지도교수	3/연	5
		졸업생추수지도	3/회	5
		신입생 OT 및 학년·학과MT 등 학생지도행사 참여	3/회	9
		취업유치 (1건당)	0.5/건	10
교외 봉사	대내외 학술 봉사 활동	저명학술지 회장, 편집위원장/부회장 및 편집위원/각종분과위원장 -국외	8/6/2/연	
		-국내		
		심사제도 학술지 회장, 편집위원장/편집위원 -국외	4/2/연	
		-국내	2/1/연	
	자문 활동	중앙정부 자문 및 심사활동 위원장/위원	3/2/연	4
		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단체 자문 및 심사활동 위원장/위원	2/1/연	
	기타	국가고시출제및심사/전국규모심사/전문영역심사	3/2/1/회	3
		수상실적(장관급이상/기타)	3/2/회	
		기금유치(장학금유치 포함)	백만원당 1점	
		기타활동	0.5/회	

## 1. 학교행정 및 각종 위원회 (2008.3.1.개정)

- ① 실·처장은 연간 6점, 기타보직은 연간 3점을 인정하며, 상위보직 한 개의 점수만 인정한다. 교무위원회와 각위원회 위원은 회의 참석 회당 각 0.5점을 인정한다. (2009.3.1.개정)
- ② 삭제 (2009.3.1.)
- ③ 삭제 (2008.3.1.)

## 2. 국내외 학회활동 (2008.3.1.개정)

- ① 저명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의 회장 및 편집위원장은 국외의 경우 8점 국내는 4점, 부회장 및 편집위원은 국외의 경우 6점 국내는 3점, 각종분과위원장은 국외의 경우 2점 국내는 연간 1점을 인정한다. 심사제도 학술지의 회장 및 편집위원장은 국외의 경우 4점 국내는 2점, 편집위원은 국외의 경우 2점 국내는 1점을 인정한다. (2009.3.1.개정)

- ② 동일 학회의 경우 상위점수 1개만 인정한다.

## 3. 자문활동 (2008.3.1.개정)

- ① 국가기관의 자문위원은 중앙정부,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서 위촉된 자문 및 심사위원을 말한다. (2009.3.1.개정)

- ② 사회단체의 자문위원은 저명한 사회단체에 전문인 자격으로 봉사하기 위하여 참여한 경우로 엄격하게 한정한다. 이에는 언론 기관 및 준 공공기관이 설립한 공익 단체, 공적인 종교관련 기관 및 사회복지 기관이 포함된다. 이윤 추구를 위한 기관, 정치 참여를 위한 단체, 장학재단, 전국 규모가 아닌 문화운동 기관의 장 및 자문위원급 등은 제외된다. 사회복지 기관이나 종교 기관의 경우, 전문성보다 개인의 신앙 활동이나 성직자의 사목 활동 범주에 해당할 경우는 제외된다. 위원장은 2점, 위원은 1점을 인정한다. (2009.3.1.자구수정)

## 4. 기타 (2009.3.1.개정)

- ① 국가고시 출제에는 수학능력시험, 사법·외무·행정고시, 기술고시, 공인회계사, 기술사, 세무사 시험,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, 청소년상담사 시험, 간호사 국가고시 등 각종 국가고시의 출제위원이 이에 해당하며, 검인정교과서 심사위원도 이에 포함한다. 출제위원과 심사위원의 봉사점수는 다음과 같다.

1. 국가고시 출제 및 채점위원(출제와 채점의 중복 인정) : 3점
2. 전국규모의 대회 심사 : 2점
3. 한국학술진흥재단, 한국과학재단, 보건의료기술연구기획평가단, 정보통신연구관리단 등 연구비 지원기관의 연구계획서 심사 : 1점
4. (2009.3.1.삭제)

- ② 봉사관련 수상 실적의 평가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서 심의·결정한다.

- ③ 방송출연(TV, 라디오, Cable방송), 월간 방송교재 집필, 전국적 일간지 및 전국적 학술(종합)교양잡지 기고, 학술강연통역 등으로 제한하며, 회당 0.5점을 인정한다. (2009.3.1.수정)

## 5. 학생을 위한 활동 (2009.3.1.수정)

학생을 위한 활동은 1년 단위로 점수를 인정받는다.

- ① 해외봉사활동 인솔교수 5점/회
- ② 동아리, 학생단체, 학습소모임 지도교수 3점/연
- ③ 졸업생 기관방문 지도, 사회복지기관방문으로 한정하며 각 1회에 3점을 인정한다. 다만 실습 등 교과목과 관련된 경우는 제외한다.
- ④ 신입생 OT, 학년·학과 MT 3점/회
- ⑤ 취업유치는 학교의 취업률에 영향력 있는 건수에 따라 0.5점을 가산한다.

## 제6조(업적평가의 최소기준) (2008.9.1.내용조정)

1.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승진이나 재임용 계약을 하려는 해당 교원마다 각 업적별로 점수를 정한다.
2. 임용권자는 전항의 업적별 점수가 다음의 각 업적별로 정한 각 최소한도의 점수 이상

을 받은 교원 중에서 교원인사규정 제22조에 의하여 재계약 또는 승진을 결정한다.

3. 2012년 9월 1일 이후 채용 교원의 승진, 재계약 기준 및 점수는 아래와 같으며 그 이전 임용자는 <별표 1>부터 <별표 5>와 같이 한다. (2012.7.1.자구수정)

#### 2012년 9월 1일 이후 신규 채용 교원의 승진·재계약 기준 및 점수

승진심사대상	최저 연수	최저논문 편수	최저연구 점수	최저교육 점수	최저봉사 점수	최저점수 합
조교수→부교수	6년	7편	90점	120점	90점	300점
조교수재임용	4년	4편	60점	80점	60점	200점
부교수→교수	5년	5편	75점	100점	75점	250점
부교수재임용	5년	5편	75점	100점	75점	250점
교수재임용	7년	3.5편	35점	140점	105점	280점
정년보장교수 (부교수→교수)	5년	7편	84점	100점	75점	259점

가. 산율(실제근무연구/근무기준연수)을 적용한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.

다만, 기준 · 편수 · 점수는 산율 및 인정비율에 의하여 결정한다.

나. 삭제(2017.5.1.)

다. 최저연구점수 중 연당 10.0 이상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(후보)지 이상에 게재된 논문이거나 교과서 이상의 저서이어야 한다. 다만, 교수재임용 교원의 경우 연당 5.0이상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(후보)지 이상에 게재된 논문이거나 교과서 이상의 저서이어야 한다.

4.~6. (2009.3.1.삭제)

#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기준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규정) 제6조 4에 대하여는 2003년 평가에 한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.

#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5년11월22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2007년 3월 1일 이전 임용교원의 승진·재계약기준 및 점수는 다음과 같다.

승진대상	최저연수	최저논문편수	최저연구점수	최저교육및 기타점수
전임강사 → 조교수	2년	2편	10점	20점
조교수 → 부교수	4년	4편	20점	40점
부교수 → 교수	5년	5편	25점	50점

논문 중 년당 2.5점 이상은 저명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어야 한다.

③(경과조치) 2007년 3월 1일 이후 임용된 교원은 제6조(승진재계약 기준 및 점수)에 따른 업적평가를 적용한다.

#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 이후 신규임용·승진임용·정년보장임용·재계약임용 자로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2008년 9월 1일 시행 당시 부교수인 교원은 교수 승진임용에 대하여 2008년 3월 1일 시행 ②(경과조치)에 의한 기준 및 점수를 준용한다.

승진심사대상	최저연수	최저논문편수	최저연구점수	최저교육및 기타점수
전임강사→조교수	2년	2편	10점	20점
조교수→부교수	4년	4편	20점	40점
부교수→교수	5년	5편	25점	50점

③(경과조치) 2007년 3월 1일 이후부터 2008년 9월 1일 이전까지 신규임용 교원의 조교수 승진에 준용하는 기준 및 점수는 다음과 같다.

승진대상	최저 연수	최저논문 편수	최저연구 점수	최저교육및 기타점수
전임강사→조교수	2년	2편	15점	20점

#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.

#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2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4조 <표2. 교육업적 인정점수>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개정된 규정은 202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제4조 <표2. 교육업적 인정점수>는 2023학년도부터 시행한다.

<별표 1> 2009년 3월 1일 이후 승진 · 재계약 기준 및 점수

승진심사대상	최저 연수	최저논문 편수	최저연구 점수	최저교육 점수	최저봉사 점수	최저점수 합
전임강사→조교수	2년	3편	30점	40점	30점	100점
전임강사 재임용	2년	3편	30점	40점	30점	100점
조교수→부교수	4년	4편	60점	80점	60점	200점
조교수재임용	4년	4편	60점	80점	60점	200점
부교수→교수	5년	5편	75점	100점	75점	250점
부교수재임용	5년	5편	75점	100점	75점	250점
교수재임용	7년	3.5편	35점	140점	105점	280점
정년보장교수 (부교수→교수)	5년	7편	84점	100점	75점	259점

- 가. 산율(실제근무연구/근무기준연수)을 적용한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기준 · 편수 · 점수는 산율 및 인정비율에 의하여 결정한다.
- 나. 삭제(2017.5.1.)
- 다. 최저연구점수 중 연당 10.0 이상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(후보)지 이상에 게재된 논문이거나 교과서 이상의 저서이어야 한다. 다만, 교수재임용 교원의 경우 연당 5.0 이상은 한국학술 진흥재단 등재(후보)지 이상에 게재된 논문이거나 교과서 이상의 저서이어야 한다.

<별표 2> 2008년 9월 1일 이후 승진 · 재계약 기준 및 점수 삭제(2017.5.1.)

<별표 3> 2008년 3월 1일~2008년 8월 31일 임용 교원의 승진 · 재계약 기준 및 점수 삭제 (2017.5.1.)

- 가. 산율(실제근무연구/근무기준연수)을 적용한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. 다만, 기준·편수·점수는 산율 및 인정비율에 의하여 결정한다.
- 나. 승진·재계약을 위한 최저점수는 연구·교육 및 기타점수를 합산한 점수로 한다.
- 다. 최저연구점수 중 연당 7.0 이상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(후보)지 이상에 게재된 논문이거나 교과서 이상의 저서이어야 한다.

<별표 4> 2007년 3월 1일 이전 임용 교원의 승진·재계약기준 및 점수 삭제(2017..5.1.)

<별표 5> 2007년 3월 1일 ~ 2008년 8월 31일 신규임용 교원의 조교수 승진 기준 및 점수 삭제 (2017.5.1.)

#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